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2호 2023. 3. 10(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3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457호 공시송달공고----- 3
-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5
- 남원시 공고 제2023-465호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8
- 남원시 공고 제2023-476호 공시송달공고-----15
- 남원시 공고 제2023-485호 공시송달공고-----17
- 남원시 공고 제2023-502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2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3-3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확정 결정되어 추진 중인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03월 03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노암동 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41,89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도시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소유 구분	성명	권리	성명	주소	
1	노암동		1	전	813	68	공유지	남원시				
2	노암동		3-1	전	75	45	공유지	남원시				
3	노암동		3-5	전	1,187	4	공유지	남원시				
4	노암동		3-7	전	212	111	공유지	남원시				
5	노암동		3	전	754	437	공유지	남원시				
6	노암동		8	전	364	36	공유지	남원시				
7	노암동		9-1	답	14	14	공유지	남원시				
8	노암동		9-2	답	372	2	공유지	남원시				
9	노암동		10-1	답	1,239	1,239	공유지	남원시				
10	노암동		10-3	답	131	131	공유지	남원시				
11	노암동		10-4	답	2,128	11	공유지	남원시				
12	노암동		427-2	전	1,314	647	공유지	남원시				
13	노암동		429	전	1,524	1,518	공유지	남원시				
14	노암동		433	전	50	4	공유지	남원시				
15	노암동		810-15	구	564	200	국유지	국(건설부)				
16	노암동		810-17	구	1,224	1,224	국유지	국(건설부)				
17	노암동		810-18	구	159	159	국유지	국(건설부)				
18	노암동		810-31	구	279	193	국유지	국(건설부)				
19	노암동	산	9-2	임	22,036	2,888	공유지	남원시				
20	노암동	산	10	임	20,640	9,672	공유지	남원시				
21	노암동	산	11-1	임	2,691	2,173	공유지	남원시				
22	노암동	산	11-2	임	5,676	5,482	공유지	남원시				
23	노암동	산	11	임	2,571	2,031	공유지	남원시				
24	노암동	산	12-1	임	14,044	2,923	사유지	함양오씨금남공파종중				
25	노암동	산	12-3	임	1,113	357	공유지	남원시				
26	노암동	산	12-4	임	720	359	공유지	남원시				
27	노암동	산	12-5	임	6,612	2,129	공유지	남원시				
28	노암동	산	12-6	임	3,306	1,113	공유지	남원시				
29	노암동	산	12-7	임	2,645	378	공유지	남원시				
30	노암동	산	12-8	임	6,743	2,559	공유지	남원시				
31	노암동	산	12-9	임	306	38	공유지	남원시				
32	노암동	산	12-11	임	204	43	공유지	남원시				
33	노암동	산	12-12	임	4	3	공유지	남원시				
34	노암동	산	12-13	임	5,984	1,128	공유지	남원시				
35	노암동	산	13	임	6,612	277	공유지	남원시				
36	노암동	산	82-1	구	46	19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37	노암동	산	82	구	53	48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38	노암동	산	83	구	99	99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39	어현동		276-2	전	436	154	공유지	남원시				
40	어현동		277-1	전	1,003	58	공유지	남원시				
41	어현동	산	88-8	임	4,620	664	공유지	남원시				
	합계	41필지			120,567	40,638						

남원시 공고 제2023 -4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3. ~ 2023. 3. 18.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3.3.3.)	김○금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777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777	주1 목조 주택 28.8㎡ 주1 목조 주택 7.2㎡ 부1 목조 축사 21㎡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공고 제2023-1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인용 조항 변경 (안 제2조, 제4조, 안 제7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03. 07. ~ 2023. 03. 2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현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23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8095),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063-620-8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465호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가 우수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급대상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안 제5조)
- 다. 포상금 지급,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3. 7. ~ 2023. 3. 2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3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81), 이메일(sky6027@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제정이유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가 우수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급대상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안 제5조)
- 다. 포상금 지급,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3. 7. ~ 2023. 3. 2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과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포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의 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중앙부처,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성과우수자 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성과우수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원시 성과관리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2항)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중앙부처,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 관련조문

- 제2조 제2호,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성과우수자 포상금 추계 근거 : 국·도비 확보액 × 0.06%

※ 2023년 남원시 국·도비 확보액: 1,768억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231,000천원 (2023년도 예산)

- 시정업무발전 우수분야 : 50,000천원
- 국·도비 확보분야 등 : 100,000천원
- 상급 및 외부기관평가 분야 : 81,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1,178,330	231,000	233,310	235,643	237,999	240,378
성과 포상금	1,178,330	231,000	233,310	235,643	237,999	240,378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감사실장 이성근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남원시 공고 제2023 - 4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7. ~ 2023. 3. 22.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3.3.7.)	전○우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 260-1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 360-1	주1 목조 창고, 화장실 22.35㎡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7.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4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8. ~ 2023. 3. 23.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3.3.8.)	김금순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55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54	주1 목조기와 주택 53.98㎡ 주1 목조기와 주택 50㎡ 부1 목조기와 창고 19.84㎡ 부2 목조기와 창고 20.25㎡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8.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502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조례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른 해체허가대상 조항 신설 (안 제9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 신설에 따른 해체공사 현장점검 필수확인점 조항 신설 (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03. 09. ~ 2023. 03. 2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485), 팩스(063-620-671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03.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 (안 제9조)

나.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규정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3. ~ 2023. 3.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평가완료(개선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p>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p>

<신 설>

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붙임 관계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

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 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영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